

## 위 임 장

수임인 : 법무법인 한 누 리 ([www.hannurilaw.co.kr](http://www.hannurilaw.co.kr))

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, 431호[서초동 G-Five Central Plaza]  
(Tel : 02-537-9500, Fax : 02-564-9889, [hannuri@hannurilaw.co.kr](mailto:hannuri@hannurilaw.co.kr))

※ 위임인 인적사항

성명		생년 월일	
주 소			
핸드폰 번호		이메일 주소	

\*추후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으시면 반드시 이메일주소를 알려 주시고, 팔호에 (O)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음 (  )

※ 승소금 수령시 지급받으실 계좌

은행명		계좌 번호		예금주	본인계좌
-----	--	----------	--	-----	------

상기 위임인은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(1심, 2심 및 3심)에 관하여 상기 수임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와 같은 권한을 수여합니다.

1. 일체의 소송행위(민사조정신청 포함), 보전처분의 제기, 반소의 제기 및 응소,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, 소의 취하, 청구의 포기 및 인낙, 복대리인의 선임, 목적물 및 판결금(화해금, 조정금 포함)의 수령, 공탁물의 납부,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, 상소의 제기, 강제집행 등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
2.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에 감리 관련 의견제시, 민원의 제기 등
3. 상기 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행위(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목도장을 새겨 위임장에 날인하는 행위도 포함)

2016. . .

위임인

(서명 또는 날인)

※ 첨부서류

1.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
2. 거래내역서 (잔고가 있는 경우, 잔고증명서 별도)

## 사건위임계약서

위임인(갑) :

수임인(을) : 법무법인 한누리

### 사건의 표시

사건번호		사건명	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
당사자		상대방	대우조선해양, 대우조선해양이사들, 안진회계법인 등

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**제1조 【목적】**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(이하 “위임사무”라 한다)를 위임하고, 을은 이를 수임한다.

**제2조 【위임한계】**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필 요한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로 하며 1심부터 3심까지로 한다 (구체적인 소송의 방식과 시기, 보전처분 및 상소의 여부 등은 갑의 이익을 고려한 을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다).

**제3조 【수권범위】**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 을 수여한다.

**제4조 【수임인의 의무】**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, 위임의 내용에 따 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5조 【자료제공 등】**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# 제6조 【착수보수】

-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본안 1심 소송비용과 착수보수로 투자손실액의 1% (착수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)을 지급한다. 투자손실액은 취득가격에서 처분가격을 뺀 나머지로 하되 이 계약체결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하여는 그 처분가격을 ‘7,010원’으 로 간주하여 산정한다. 이 금액은 먼저 인지대 등 소송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1 심판결 후 소요된 비용과 정산하여 나머지를 착수금으로 보기로 한다. 단, 위 투자손실액이 1,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갑은 을에게 본안 1심 소송비용과 착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 급한다.
-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, 조사,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 수한 후,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,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, 청구의 포기, 인낙, 소송상 화해, 조정, 소송물의 양도,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 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 약 해지,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 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

한다.

-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,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(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)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.

## 제7조 【성과보수】

### 가. 성과보수

위임사무가 판결,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(화해권고결정 포함), 조정(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)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갑이 실제 수령한 금원(지연이자 포함) 중 다음의 비율에 따른 금원(부가가치세 포함)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.

① 본안소송 제기 전의 단계부터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: 실제 수령한 금원의 10%

② 2심이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을 수령한 경우: 실제 수령한 금원의 13%

③ 3심이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을 수령한 경우: 실제 수령한 금원의 15%

나. 승소로 보는 경우 :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,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, 소의 취하, 상소를 취하한 경우

②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,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

### 다. 성과보수의 지급방식

① 갑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때에는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을 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.(지급지체시 지연이자율은 연 12%로 한다)

② 을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, 을은 그 지급받은 금원 중 성공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7일 이내에 갑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.(지급지체시 지연이자율은 연 12%로 한다)

라.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, 소의 취하, 인낙,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,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## 제8조 【비용부담】

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, 송달료, 감정료, 예납금, 보증금, 등사료, 여비, 기타 필요한 실비 중 제1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제6조에서 의한 금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
② 항소심 등을 위한 인지대 등을 갑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

## 제9조 【계약해지】

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,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.

## 제10조 【통지의무】

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, 위임이 종

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1조 [보수지급의 지체]

-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,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 [자료의 보관책임]

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.

#### 제13조 [지급보장]

-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,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,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.
-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 [인장조각]

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,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단,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5조 [비밀유지]

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,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16조 [중요사항의 결정]

을은 합의안, 화해안, 조정안의 수락여부, 이미 제기된 소송의 취하, 화해, 합의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갑과 동종의 처지에 속한 피해자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, 피해자들의 집합적인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 경우 갑은 이러한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.

#### 제17조 [정보제공동의]

갑은 을에게 제1조(목적)와 제2조 (위임한계)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정하는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.

#### 제18조 [민법과의 관계]

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.

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,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6 . . .

갑 : 위임인 (인)

을 : 법무법인 한누리  
대표변호사 김주영

## 개인정보 제공 동의

### 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]

#### 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

- 법원 제출 서류의 필수기재사항 및 사건진행경과(결과)보고, 승소금 수령 필요사항
- 청구서 발송,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(현금영수증) 발행 필요사항

#### 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, 계좌번호, 기타 소송에 필요한 항목  
(법인의 경우, 법인담당자의 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 등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항목)

####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,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또는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5년 동안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.

#### 4.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 사항

-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제출 서류 등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세무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.

동의하지 않습니다.

### [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]

#### 1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목적

- 회사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각종 소송수행 필요사항

#### 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, 계좌번호, 기타 소송에 필요한 항목

#### 3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

대한민국 법원

#### 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,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또는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5년 동안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.

#### 5.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 사항

-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제출 서류 등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세무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.

동의하지 않습니다.

20 년 월 일

현금영수증발행 번호(휴대폰번호)

동의인 성명

(인,서명)

\* 근거법령 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[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] 등.